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나34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나341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가단50957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솔

변론종결 2024. 2. 27.

판결선고 2024. 4.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가단50957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49,383,490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383,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보험계약자(D)의 피보험자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자가 위 상품판매대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그 연대보증인 C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여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갑 제1호증의2 보증보험약정서 제3조 제1항).

나. D가 거래종료후 F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2. 12월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3. 1. 17. F에게 48,829,64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갑제3호증). 그 후 원고는 D와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023가단10106). 위 법원은 2023. 8. 23. “피고들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70,446원 및 그 중 48,829,643원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3. 6. 27.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22. 11. 1.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0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C는 2022. 11. 3. H에게 C 소유의 동두천시 I에 있는 J호 1층 건물과 K외 1필지 L주유소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7. 위 건물들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2. 11. 1. 무렵 재산 상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증거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11. 1.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② 위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 내에 D의 F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무렵에 D 주유소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사고로 인한 F의 보험금 청구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니,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앞의 1.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제사봉행 등 목적으로 후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여야 하고 타에 매매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 C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 각 부동산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붙여 C에게 증여하였는바,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3. 28. 아들인 C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여 2011. 3. 11.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가 2011.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M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2.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C는 2018.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저당권설정 등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C는 2020.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별지1 기재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1 기재 3 내지 10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나서 곧바로 동두천시 I에 있는 J호 1층 건물과 K외 1필지 L주유소 건물까지 제3자에게 양도한 점(앞의 1.의 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164,409,15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계약금 79,900,000원 외에 나머지 잔금이 C에게 지급되었다거나 C가 위 잔금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그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1)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으로 그 피담보채무 79,900,0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뤄져야 하는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1.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64,409,15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말소된 근저당권자 G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79,900,000원임은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84,509,150원(164,409,150원 - 79,900,000원)이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액수는 '49,070,446원과 그 중 48,829,643원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3. 6. 27.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 할 것인데(앞의 1.의 나.),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383,49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9,383,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9,383,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오연정, 판사 안승호

별지

1) D와 C